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무 신설 등 〉  
■ 최민희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0229호)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br>의무 신설 등(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38인

나. 발 의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되는 물론 소수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

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 제6항 및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무 신설 등(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회의 중 공개 대상인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7항 신설), 방심위의 경우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신설).
- 참고로, 방통위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제5항1)에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회의) ① ~ ⑤ (생략) | 제13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⑥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u> |
| <u>⑥·⑦</u> (생략)     |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회의 등) ① ~ ⑤ (생략) | 제22조(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
| <u>&lt;신설&gt;</u>     | <u>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u> |
| <u>⑥·⑦</u> (생략)       | <u>⑧·⑨</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 나. 검토 의견

○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는 법 제13조제4항<sup>2)</sup> 및 제22조제2항<sup>3)</sup>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또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조<sup>4)</sup>, 제9조<sup>5)</sup> 및 제10조<sup>6)</sup>에서 회의록 작성, 공개 및

-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 ② 삭제
-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방통위가 2024년 6월 기준 2인 체제(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로 운영되고 있는데,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방심위도 위원장을 여당에서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수 위원들의 발언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회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 중 공개 대상인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방심위의 경우 최근 회의 속기록 내용 중 일부가 사라지는 사건<sup>7)</sup>이 발생하였는데, 개정안은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전까지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설비·장비 등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회의록 보존 등)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7) 한겨레, 2024.5.2., “[단독] 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8992.html>)

- 아울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 회의 규칙<sup>8)</sup>이 있음.
- 종합해보면,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방심위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방심위에서 여당 추천을 받은 다수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 인터넷 중계 및 공개와 회의록 보존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실제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설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의결로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